자료집

동물권행동 카라 건강성 강화 및 정상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

2024. 7. 6. (토) 14:00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주관: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카라지회

주최: 국회의원 김재원

목차

인사말

김재원 국회의원 ····· 3p

경과보고

고현선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카라지회 지회장 ····· 5p

발제

최태규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 ····· 10p

이선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카라노조 법률지원팀 팀장 ····· 14p

미정 동물권행동 카라 이사회 ····· 26p

토론

김소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카라노조 법률지원팀 변호사 ····· 27p

김솔 환경운동연합 노동조합 위원장 ····· 33p

윤도현 동물권행동 카라 후원회원 ····· 35p

질의응답 및 토론

인사말

김재원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재원입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동물권행동 카라 건강성 강화 및 정상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중요한 행사를 주관해주신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카라지회와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주실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의 동물권리와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물구조와 보호, 그리고 관련 법안의 제정 및 개정 활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히 헌신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동물의 권리와 복지가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많은 이들이 동물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카라 내부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조직의 건강성과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카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도전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의 건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동물권리 운동은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추구하는 중요한 사회운동입니다. 하지만 사회운동 대상인 동물을 보호한다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지만 상당한 시간과 물리적인 기여로 사회운동의 지속을 만들어가는 활동가들의 인권이 침해받는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동물권리 운동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건강한 활동을 위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조직에 의견을 내며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과한 것은 줄여가야 합니다. 그것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논의가 결실을 맺어 동물권리와 복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6일

국회의원 김재원

경과보고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지부 동물권행동카라지회

카라 노동 조합 경과 보고

고현선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동물권행동카라지회 지회장

동물권행동 카라

정기후원 회원 약 18,000명

23년 후원금 약 68억

활동가 71명(사측 포함)

동물권 단체 노조 사례

건행직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만들기

2021-2023 동물권행동 카라의 조직 진단

1. 전례없는 활동가 줄퇴사. 3년간 48명
2. 건강한 갈등 조정 능력 부재
3. 초단기 근로계약과 특정 직급 연봉제 도입으로 양극단 인사 운영
4. 모든 의사결정기구 대표 1인 독단 운영
5. 내부 논의없이 대규모 구조 연속 진행으로 하반기 사업 마비 초래

노동조합이 아닌 개인과 팀의 입장으로 개선을 시도했던 사례

- 2023년 5월 4일(목) 14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일하는 조직문화 만들기>
- 2023년 6월 27일(화) 조직문화 쇄신안 요구 활동가 성명서 연명요청
- 2023년 6월 28일(수) <조직문화 재구성> 책 세미나
- 2023년 6월 29일(목) 동료들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워크숍
- 2023년 7월 4일(화) 교육아카이브팀 5명 활동가 형사고발 부적절성에 관한 의견서 집행위에 전달
- 2023년 7월 13일(목) 전진경 대표, 임순례 이사 카라 활동가 대화

노조를 만들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노조를 만들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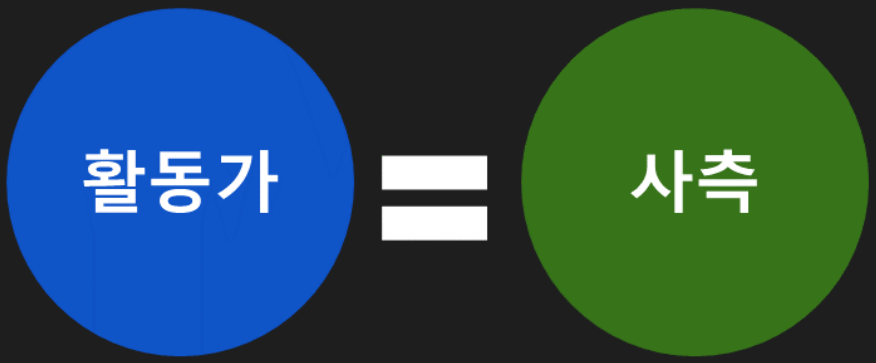

균형있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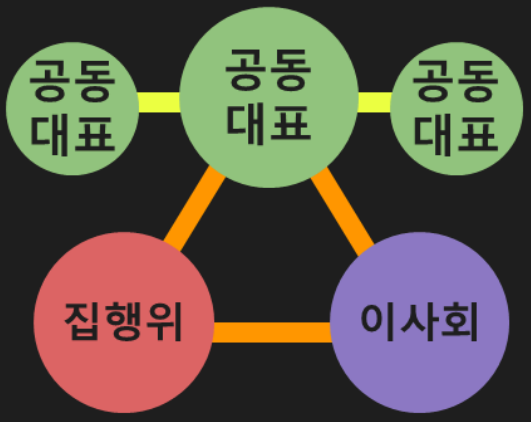

2024 카라 노동조합의 3대 목표

주요사건

- 셀프연임
  - 총회 선출 절차를 과정을 않고 이사회에서 대표 연임 결정
- 탈세방조
  - KK9과에 위탁비, 훈련비, 병원비, 해외 이동비등을 송금하면서 차명계좌 사용.
- 배임(골드바 구매)
  - 법인카드로 골드바(금 10돈) 2개 구매.
- 동물학대
  - 전진경 대표 취임 이후 센터장으로 고속 승진한 이 모 국장이 다년간 40마리가 넘는 동물들을 폭행함.

발제문 1

‘카라 2.0’은 동물운동 전체의 과제입니다

최태규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

이 공청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서 ‘카라 2.0’이라는, 저로서는 ‘키워드’로 느껴지는 낱말의 조합을 들었습니다. 귀에 쏙 들어오는 캐치프레이즈로 유명한 카라 활동가답게 잘 뽑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카라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2.0으로 넘어갈 것이냐 1.0 아래로 다시 내려갈 것이냐의 경합이라는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요하게 봅니다.

저는 동물단체를 꾸리고 활동한 지 5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2000년대 초반 대학을 다닐때부터 동물권리와 동물복지를 공부하며, 그 실천인 동물운동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동물운동은 ‘보신탕 금지 운동’이 주요한 주제였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명쾌하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는 인간의 친구이기 때문에 먹지말자’는 주장은 운동의 담론이라기에는 설득력을 갖기 힘들었습니다. 직관적인 주장이지만, 구호에서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엄벌에 처하자는 요구는, 동물을 둘러싼 복잡한 맥락을 납작하게 누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별의 동물, 종으로서의 동물,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묶인 집단으로서의 동물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친구인 동물은 무엇인가, 동물의 죽음과 인간의 동물 죽임은 무엇인가 같은 이야기를 나눌 틈새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15년이 지나며 동물운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카라에서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장면으로 동정심에 호소하는 관행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장면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다뤄야 하는 담론을 생산해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넘어 인간과 함께 살고 있는 비인간동물 전반을 톺아 보려고 까치발 드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더숨 센터에 책방을 만들고, 잡지를 발간하며, 대중 교육을 위해 체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동물에 공감하자는 부르짖음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동물을 다루는 담론을 구성하기 시작하는 과정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으로 남은 것은 2018년 <동물권 활동가를 위한 인권 길라잡이>의 제작이었습니다. 이 책자의 여는 글은 “몇몇 활동가가 자발적으로 모여 작은 팀을 이루었”고 “각자의 경험과 고민을 자유롭게 나눴고 때로는 좁혀지지 않는 이견을 확인하며 치열하게 토론했”다고 밝힙니다. 이 책자는 당시 한국사회 운동 안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던 언어 사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같은 일탈적 폭력보다 우리 사회와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제도화된 폭력성을 지적하며 동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태도를 세심하게 다뤘습니다. 이 ‘길라잡이’는 운동 안에서 활동가들이 경험하는 장벽에 균열을 내고,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였습니다. 동물단체에서 이례적으로 진보적인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카라의 행보에서는 이 빛나는 성과를 뒷주머니에 집어넣고 입구를 꿰매어버리려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이 길라잡이가 내내 불편했던 사람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망가뜨리면서까지 퇴보의 기회를 잡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시민단체의 활동가가 무심하게 저지르는 차별과 혐오를 경계하기는커녕, 노골적인 노동 탄압을 저지르는 사업주가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강변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활동가가 “원피스”를 입었다며 “아직 활동가가 덜 됐”다고 퉁주고, 채용 면접에서 출산 계획을 묻는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자마자 대표가 만육천명의 회원에게 “진통”이 “예상”되니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면 대표 개인에게 연락하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노동조합 대응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인사팀장 채용공고 우대사항으로 적어 채용했습니다. 악덕 기업에서나 보던 어용 노조가 만들어지고 활동가들을 갈라치기 하며, 외부에서 연대하려는 시민 모임인 공동대책위원장과 노동조합 지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습니다. 언어를 찾던 운동의 수준이 범죄자를 찾는 수준으로 떨어져버렸습니다.

노동조합의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퇴보는 명징한 선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려내야 하는 썩은 세포의 실체를 빨간펜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켜켜이 쌓인 문제가 터져 나오는 과정은 모두에게 무척 고통스럽지만, 그 동안 동물운동이 왜 이렇게 부족해 보였는지를 많은 이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카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수준을 자랑하는 국가에서 유기견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마치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활동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동물이 겪어야 하는 경험이나 자원 낭비를 성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활동가들의 성찰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연 수십억 모금 단체가 그런 성찰의 목소리를 짓밟아버리는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데에 몰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빈곤을 핑계 삼아 어린이를 해외에 팔아 넘기며 돈과 명예를 얻은 단체들의 '동물 버전'이 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 카라영화제에서 백인 활동가가 제3세계 동물착취 장면을 마주하고 눈물 흘리는 영화였습니다. 그 식민주의와 타자화, 구원자 서사에 반쯤 보다 못 참고 뛰쳐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째서 2020년대까지 그런 영화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상영했는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동물보호소를 표방하며 지은 더봄 센터에 대해서도 저는 늘 의아하게 느꼈습니다. 다른 나라의 좋은 보호소들을 충분히 참고하면서 막대한 후원금을 들여 지었다고 들었는데, 정작 그 안의 동물의 삶의 질과 인간과의 관계는 아직도 90년대 훈련사가 운영하는 훈련소와 다를 바 없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째서 그 화려한 건물 안에 살고 있는 동물의 삶은 여느 민간보호소에서 땅을 파고 숨는 개보다 더 제한되고 있는지, 동물에 그토록 진지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째서 동물을 돌보는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지 않고 뭔가 해보려던 사람들이 절망하고 나가는지, 이 수많은 질문들이 이번 사태로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문제를 파고드는 활동가들이 내내 이 비민주적 구조에 절망하며 조직을 떠났던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불쌍한 개를 구조하며 홍보하면 돈과 관심이 모이는 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물단체의 다양함을 차치하고, 그 역할에 따라 동물단체를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국의 대다수 작은 동물단체처럼 유기견 구조나 고양이 tnr 등, 대중이 동의하지만 국가가 미비하게 처리하는 일을 대리하면서 후원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체가 있습니다. 둘째는 대중의 인식을 앞서 나가면서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고 정책과 담론을 만들어내는 단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후자의 역할이 훨씬 많은 자원과 축적된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래되고 큰 단체가 집중해야 할 일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요 몇 년 사이 수족관에서 기르던 돌고래를 바다로 푸는 일이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돌고래가 방류되었을 때 돌고래의 생존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 동물단체들은 '하루를 살더라도 바다에 사는 게 낫다'는 쪽과 '죽을 것을 알고 바다에 푸는 것은 유기다'는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동물종과 특정 개체의 생물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인간의 행위가 동물에게 미칠 영향을 윤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바다에 돌고래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수족관보다 나은 상태의 감금을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다에 보호시설을 만든다면 그 안에서 몇 마리의 돌고래가 어떤 일상을 영위하며 살

것인지, 시설을 만드는 데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어떤 사람들이 운영하고 구경하러 갈 사람들인지도 고민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라와 같은 조직의 역할은 무척 중요합니다. 사육되는 야생동물을 둘러싼 담론을 만들고 사회에 던지면서 윤리, 생태, 동물의 복지 등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사람과 자원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각 분야의 활동가와 연구자들을 만나서 깊이 있는 고민을 결과물로 낼 수 있는 조직입니다. 던져진 주제로 활동가들 사이에, 단체 사이에 건강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져야 우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라는 지금 3년차 활동가 한 명을 전시야생동물 담당자로 두고 알아서 공부하라고 던져두었습니다. 전시야생동물에 대한 통찰을 배울 기회는 온전히 이 활동가 한 명의 개인적 의욕에 달려있습니다. 이 활동가가 조직 상부의 무관심에 지쳐서 활동을 그만두면, 카라는 다시 다른 단체가 적은 성명서에 연명할지 말지 정도의 고민을 담은 단체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계속 남을 것입니다.

카라에 노동조합이 생기고 조직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동물운동에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동물에 대해 그 전 세대와는 다른 감각을 가진 젊은 세대가 민주적으로 조직적으로 동물운동을 만들어간다면 이 땅의 비인간 동물에게는 지각변동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카라가 겪는 고통은 동물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문 2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존재는 동물권 활동을 저해하는가

이선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카라노조 법률지원팀 팀장

서론

최근 다시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홈페이지를 들어가보았습니다.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라는 슬로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카라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모든 생명이 균형과 조화 속에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 하는 것입니다. 카라의 미션은 '시민들과의 지식과 배움의 공유를 통해 동물에 대한 이해와 공감, 참여를 확대하며 폭넓은 연구와 다양한 실천을 통해 문화와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이어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동물복지를 증진한다.'는 것입니다.

카라의 슬로권, 비전, 미션을 요약하면 '동물이 존엄한 생명으로서 공존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지식 공유, 다양한 실천를 통해 동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산시키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동물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동물과의 공존, 동물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시민들과 교류하며, 실천하고, 공감대 확산을 통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는 아래의 이유로 당장은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카라지회(이하 '카라노조')는 2023년 8월 경 설립되었습니다. 카라노조에 의하면 카라에서 최근 3년간 활동가 40여 명이 퇴사했고(전체 활동가 약 60여 명), 3개월 초단기 계약직이 생기는 등 상시업무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였습니다. 카라 노조는 이러한 현실에 문제점을 가지고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단체의 공공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감시자'가 되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오마이뉴스 2024. 1. 11. 기사).

하지만 카라의 대표, 이사회, 사측은 카라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라노조와 카라 사측의 교섭은 12차까지 진행된 바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도 2차례나 했지만 결국 조정도 합의취하되었습니다. 교섭과 조정이 파행으로 치닫자 카라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공론화하였는데(동물폭행, 후원금 부적정 집행 문제), 카라는 단칼에 카라노조의 주장은 대부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카라노조 지회장과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바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이하 '노동자')가 아니며, 카라 및 카라 소속 활동가의 목표는 '동물복지 증진' 등이므로, '근로조건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노동조합 활동은 카라의 비전, 미션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는 노동자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지속가능한 동물권 운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자 합니다.

2. 시민단체 활동가도 노동자다 – 활동가와 노동자라는 이중의 정체성

가. 시민단체 활동가란?

활동가는 누구일까요? '활동가'는 i) '사적인 이익이 아닌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 혹은 공익을 위해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 ii) '불특정 다수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 iii)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의부터 iv)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을 소득 활동으로 삼는 사람', v) '직업으로서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가로 일하는 사람', vi) '여러 직업 중 하나로 활동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 이르기까지 관점에 따라 혹은 분류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스팩트럼 내에서 시민단체 소속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를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사회적 변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활동가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해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를 촉진시키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는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나. 시민단체 활동가의 노동자성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동을 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하 '근기법').

활동가는 가치를 기반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도 동시에 활동비, 임금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고, 정해진 근무 시간을 준수하며, 시민단체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으며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에 있어 고용주의 지시를 따른다면 이는 근기법상 노동자 정의에 부합합니다.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노동자라고 인정된다고 해서 활동가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 활동가가 노동자인지 왜 계속 질문을 받을까요? 활동가는 사전적으로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힘쓰는 사람'(표준국어대사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 따르면, 그 목적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태도, 자세, 본분 등 가치지향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정리하자면 시민단체의 노동자들은 활동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요구받는 노동자입니다.

다. 시민단체 활동가가 노동자로 불리기 불편한 이유

그렇다면 "활동가는 노동자다."라는 명제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예전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활동가성을 긍정적인 덕목처럼 생각해서, 노동조건에 대해 따지는 순간 자신의 헌신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했던 활동가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어느 정도필요한 급여를 받는 것, 소진되지 않도록 노동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야근 없는 노동시간을 지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활동가와 노동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함께 가는 것이다. 이제는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해서라도 활동가의 노동자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자신을 노동자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의 경우 사용자가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거나, 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곤 합니다. 또한 시민단체는 '돈도 없는 데다 일하는 너희도 성장하는 거니까 보상받지 않아도 괜찮지 않아?'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식이 시민단체 활동가를 노동자이면서 활동가를 지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라는 지향이 노동자의 정체성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라. 시민단체에도 사용자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시민단체의 사용자는 누구일까요? 노동자 보호를 위해 근기법상 책임과 의무를 지는 자가 사용자입니다.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그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카라의 예를 들면, 사업주는 '카라' 법인 그 자체입니다.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우임을 받고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카라의 예를 들면 카라 대표가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여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의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카라의 경우 카라 노동자들의 임금결정, 임금지급, 채용여부 결정 등 직책에 관계 없이 업무의 실질이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단체에도 근기법상의 사용자가 존재합니다. 시민단체의 사용자는 단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활동가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이라는 기본적 의무가 있으며, 부수적으로 사용자의 배려의무(인격배려의무, 안전 그 밖에 근로환경에 대한 배려의무 등)가 있습니다.

3. 시민단체 활동가의 노동조합활동

가. 시민단체 내 노사관계의 보편성과 특수성

"노동조합"의 법적 정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쟁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회사에만 유리하거나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근로조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기본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대립구도가 형성됩니다.

다만 시민단체는 기업처럼 운영되지 않고,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보니 일반 기업과는 다른 노사관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임금인상 부분은 후원금 및 전체예산을 고려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카라의 경우 동물과 카라 활동가의 관계, 동물권 활동의 특성, 주말과 밤낮이 없는 '긴급한' 구조를 위한 활동의 특성이 일반 기업의 노동자와 다른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가치'와 '신념'에 동의하는 노동은 단순히 노동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이든 위계와 통제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단체는 지배적 지위와 종속적 지위가 형성됩니다.

시민단체에서 노사가 대립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단체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 바탕을 둡니다. 하지만 정말 이윤추구를 하지 않는 조직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카라의 경우에도 후원을 받아야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후원을 받기 위해 후원금 모집행위를 하고, 후원금의 총액 안에서 운영해야 하는 조직이므로, 노동자들에게 쓰는 예산을 비용으로 상정하는 경영방식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민단체가 노동조합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특별한 가치지향과 운영원리를 가지기 때문에 일반기업과 다른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하는 많은 시민단체 내의 노사분쟁은 일반기업의 노사분쟁과 굉장히 유사한 양상을 띱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를 둘러싼 긍정적 이미지는 시민단체의 부당한 행위를 가리면서 노동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 시민단체 노동조합 활동의 필요성 - 시민단체 활동가의 권리찾기

많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자기검열 합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활동을 하면서 힘든 것, 불편한 것, 부당한 것은 일부 내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이 희생하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일과 삶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들 대부분이 이미 장시간의 추가노동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집니다. 노동조합법은 헌법 제33조를 구체화하여 노동3권을 보장합니다. 활동가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노동조합을 하는 것은 그들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활동가의 노동 조건과 권리 보호의 측면에 있어서 노조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동 조건과 기타 제반의 문제에 대한 협상의 주체가 됩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이를 단체협상에서 요구하거나 사측에 별도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활동가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해고나 구조조정 등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여러 갈등이 발생합니다. 임금 문제일 수도 있고, 노동 강도, 활동가들의 노동권 침해 문제 등 여러 유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로 활동가들이 떠나는 것으로 문제해결을 해 왔습니다. 조직 내 견제기구가 없다보니,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땅히 없을 때가 많습니다. 노동조합이 시민단체 내부의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활동가들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가의 노동자성을 회복하고, 활동가 스스로 찾을 수 없던 권리를 함께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구체적인 사례 – 참여연대 노동조합

2017년 참여연대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순수 국내 활동 단체 중 처음으로 활동가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점이 주목할만한 지점입니다. 참여연대 노동조합은 참여연대 내 문제가 있어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활동이 지속가능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창립선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조합은 내규에 노조 목적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 · 향상 및 참여연대의 민주적 운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에는 이미 간사전체회의, 노사협의회, 평간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직, 협의회는 노동조합처럼 권한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회를 향해 저녁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야근하면서

쓰는 모순, 생활임금을 주장하면서 그 단체는 최저임금도 못 주는 운동의 모순을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내적 동기가 컸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노동조합 설립이후 참여연대의 노동조건이 일부 개선되고, 최저임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퇴사율이 낮아졌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17년 이전 평균 6.8명, 이후 5.25명). 또한 노동조합의 여러 노력들로 조직문화가 조금씩 수평적으로 변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도입(주말 근무 시 평일 1.5배 휴가), 시차출퇴근제 보완, 안식년 제도, 고충처리위원회 기구 정비 등을 내부 변화로 꼽았습니다.

4. 카라 활동가들의 노동조합 활동

가. 카라노조의 설립 배경 및 목표

카라노조에 의하면, 카라노조를 설립한 카라 활동가들은 2021년~2023년까지 3년간 약 44명의 활동가가 퇴사하고,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여 형사고발조치, 고충위원회를 징계를 위한 절차로 이용, 노무법인 자문 비용 급증, 초단기 근로계약, 모든 의사결정기구를 대표 1인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카라 활동가들은 노동조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카라노조를 만들면서 정한 3대 목표는 1) 비정규직 철폐, 2) 구조된 동물의 복지 향상 3) 민주적인 조직운영입니다.

나. 단체 교섭 및 노동위원회 조정 과정

카라노조와 카라 사측의 단체교섭은 2024. 1. 4.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약 4개월간 12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지만, 단체교섭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카라노조는 2024. 4. 25. 카라 사측과 교섭 결렬을 선언하였습니다. 그후 카라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하여 100% 찬성 의결을 하였고, 2024. 5.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카라 사측과 1차 조정, 2024. 5. 23. 2차 조정을 하였습니다.

카라 사측과 카라노조가 2024. 5. 23. 2차 조정 끝에 만들어진 최종 조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협약 사항

가. 2023년 기본급을 현재 기본급 1,936,800원에서 6% 인상한다.

- 시행시기는 2024. 1. 1.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나. 연장근로 1.5배 수당 및 미연차 수당 지급한다.

다. 임금체계 개편 관련하여 노사는 TF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2. 단체협약 사항

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총 7인으로 구성하며 (회사: 4명, 노조: 3인) 의장은 사용자가 맡는다.

나. 단체협약안 중 미합의된 사항은 조정 후 게속 교섭에서 논의한다.

3. 기타 현안

가. 원활한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서 6월 30일까지 마포 DMC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한다.

- 노조 전임자 활동시간으로 2,000시간을 부여한다.

나. 회사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계약직 활동가를 7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한다.
이후 회사는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활동가를 채용할 필요가 있을시 노조와 합의한다.

이 중 임금협약사항 1. 나.의 **연장근로수당은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내용**이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사용자가 근기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즉, 기본급을 6%(1,936,800원 -> 2,053,008원) 인상하는 것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협약 사항입니다.

2. 단체협약의 경우에도 징계위원회 구성은 총 7인으로 하고, 회사에서 과반을 구성하고 의장을 맡으므로, 징계위원회에서 노조의 역할은 의사결정의 참여자 및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 마음만 먹는다면 회사가 원하는대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항입니다.

3. 기타 현안의 가. 노동조합 사무실의 경우 우리 법원은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7064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조합원 99명 이하인 노동조합은 2,000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24조의2 제4항).

고용노동부가 2020. 11. 19. 개정하여 발표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사용자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Ⅱ.기본원칙 제1항). 이처럼 카라노조와 카라 사측이 합의한 내용은 근기법, 노동조합법에 근거하거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라 사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상식적인 조정안마저 거부하였습니다.**

다. 공론화를 통한 문제제기와 카라 사측의 즉각적인 반박

이에 카라노조는 카라 내부의 문제를 공론화하였습니다. 카라노조는 숙고 끝에 2024. 5. 27. 동물단체인 카라에서 동물폭행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그 충격은 상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라 사측은 당일 제대로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동물폭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오히려 카라 사측은 2024. 5. 29. 마녀사냥을 멈춰달라는 글을 SNS에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카라 노조는 2024. 5. 30. 동물폭행 소리가 담겨 있는 음성 파일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카라 사측은 '동물폭행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카라노조와 공대위는 고민 끝에 2024. 6. 4. 차명계좌 입금을 통한 금융실명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방조혐의, 골드바 구입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의혹을 추가로 공론화하였습니다. 탈세의혹, 업무상 배임 의혹은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차명계좌 거래는 명백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공개하자마자 카라와 KK9R은 바로 부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SNS를 게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거래라는 최소한의 마저 부정하는 카라 사측을 보면서 깊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단체의 노동조합 활동의 특수성이 있겠지만, 카라 사측이 카라노조를 대하는 태도는 일반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조건을 둘러싼 대립,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적대적인 행위, 조직 내 노동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과 같이 일반 기업에서 볼 수 있는 노사분쟁을 카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찍어내기식 징계,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불분명한 인사평가를 통한 계약해지, 반복적인 징계엄포 등 카라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는 '노조를 탄압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 카라노조 존재의 의의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의 성장에 따라 각 시민민단체들의 영향력은 커져 왔습니다. 하지만 단체가 커진 만큼 그에 따른 강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정치에서의 민주주의는 일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직장 내 민주주의는 요원합니다.

현재는 카라노조가 공론화한 문제들이 해결되지도 않았고, 카라노조가 제시했던 처음 3가지 목표(비정규직 철폐, 구조된 동물의 복지 향상, 민주적인 조직운영)도 달성하기 요원해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라노조가 문제제기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들은 더 곪아서 아예 치료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나선 카라노조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카라노조를 통해 카라 활동가들이 더 좋은 노동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고, 활동가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카라 내부에서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들고 카라노조와 카라 사측이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까지 체결할 수 있다면, 카라노조는 카라라는 조직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구체적이고 주요한 조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카라는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카라노조를 통해 거침없는 비판과 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카라노조는 사측의 '선의'가 아니라 '동등한 지위'에서, '건의'가 아니라 '협상'으로 노동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카라노조의 활동을 통해 카라의 활동가들이 더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카라를 자랑스러워 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카라 활동가들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기원합니다.

5. 결론 및 제언 – 동물권 운동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하여

어떤 단체라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토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단체의 경우 사상,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기존 사회를 비판하며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권, 동물의 복지, 동물을 위한 활동도 여타 다른 단체의 활동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카라가 2021년 발행한 '동물권 활동가를 위한 인권길라잡이'를 보았습니다. 여는글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인권을 넘어 생명권을 지향한다는 우리의 선언은 인권의 중요성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인권보다 동물권이 시급하다거나, 인권 없는 동물권 운동이 가능함을 의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의지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기에 모든 생명의 권리 또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 *동물권 운동은 본래 동물을 위한 것이지만 이 운동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동물이 소외되고 착취되는 세상을 만든 것은 인간이기에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물권 운동이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외침이 사람을 향한다면 우리는 운동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을 위해야 할 동물권 운동이 인간 사회의 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답습한다면 우리 운동의 목적과 방법론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카라는 이미 나아가야할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위 길라잡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에는 '활동가'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동물권과 함께 인권, 사람의 권리, 활동가의 권리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카라의 활동가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물권단체 활동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카라 사측은 카라노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노동자'란 높은 임금과 안정된 일자리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카라 단체의 목표 및 동물권활동과 충돌한다고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카라의 후원회원들은 카라의 노사관계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노동자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카라와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고, 카라의 노동조합을 더 높은 임금을 얻고자 하는 이기적 존재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라 대표, 카라 이사회, 카라의 사용자, 동물권 활동을 하는 모든 분에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영리행위를 하더라도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들도 내부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 노사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들에서의 분쟁을 일반 기업과 다르게 예외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의는, 카라 활동가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카라노조)이 동물권 활동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지, 시민단체의 노사갈등은 일반 기업, 다른 비영리법인과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서 카라 활동가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시민단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라노조의 현재 활동이 카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현재 공론화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발제문 3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

토론문 1

동물단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카라노조 법률지원팀 김소리

1. 동물단체 운영 관련 지속적 논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동물단체들의 후원금 부정사용 등 운영의 투명성, 윤리성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카라 건이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동물단체에서 잊을 만하면 부적절한 후원금 모금, 운영자의 후원금 부정사용 이슈가 터집니다. 열악한 환경과 건강 상태의 동물들을 전시하고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여 치료비, 돌봄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고 실제로는 무책임하게 운영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많습니다.

카라가 해외입양시 이용하는 KK9R이라는 단체의 부적절한 회계, 세무 처리도 공론화되었습니다. KK9R은 국내에서는 잘 알려진 꽤 큰 해외입양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카라로부터 받은 각종 비용을 직접 입금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이름으로 지급받는 등 탈세가 의심되어 현재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뿐 아니라 KK9R은 미국법인과의 관계도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는 등 후원금과 카라 등 단체로부터 받는 각종 비용이 얼마인지와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합니다(개인적으로는 이번 카라 사태와 별개로 '해외 입양' 자체에 대해 동물운동계에서 진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동물학대가 의심되거나 미신고된 개농장 및 번식장을 급습하여 동물을 구조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방송하며 후원금을 모집하는 이른바 '타격 컨텐츠'의 문제도 보도되었습니다. 동물 구조

현장을 방송하여 개들의 불쌍한 모습, 구조하는 모습을 방송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여 일단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구조 이후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단체에 구조동물을 보호할 책임이 없다 보니 결국 구조 동물들은 지자체 보호센터로 가게 되는데, 지자체 보호센터 역시 포화상태여서 계속하여 동물들을 수용하기 어려워 결국에는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케어'가 동물구조 후 비밀리에 안락사를 한 것이 문제되자 이제는 이렇게 지자체 동물보호소에 위탁하여 안락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런 식의 후원금 모금은 신종 '사업'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고액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 실질이 "업체"인지 "보호단체"인지 불분명한 사례들이 점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단체의 경우, 후원금 관련 부분을 넘어 운영 자체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카라 이전에 이미 대형 동물단체인 동물자유연대, 케어에서는 현재 카라노조가 문제제기하는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경우 2018년 11월 전현직 활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모여 만든 '동물자유연대 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를 통해 대표의 단체 사유화, 조직내 민주주의 파괴, 직장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고, 케어의 경우 2019년 1월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에서 내부 안락사 문제를 폭로하고 이후 노동조합(이하 "노조") 설립으로 이어지면서 케어의 조직 내 비민주주의, 독선적 의사결정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동물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논란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 대형 동물단체내 노조 설립 등을 통한 내부 개혁 운동

가. 동물자유연대, 케어의 선례

동물자유연대와 케어에서는 이미 카라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겪은 바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2018년 11월 전현직 활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모여 만든 '동물자유연대 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조직 내 여러 문제들을 공론화했는데, 노동조합도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로 확인되는 위 대책위 주장에 따르면, 동물자유연대 대표가 대표 자신의 측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려는 의도로 정기총회에서 사전 공지 없이 정회원 자격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킨 점, 대표의 언행에 항의하는 활동가들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가 내려진 점, 평소 비건 활동가를 비난한 점, 결국 활동가들이 퇴사하기도 한 점, 이사진 일부가 '시민단체에서 무슨 노조 활동이냐'고 하는 등 노조 설립을 제재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현재 카라와 같이 대표자와 노조측의 공방이 한동안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확히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보도상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는 노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케어의 경우에도 2019년 1월 비밀리에 이루어진 내부 안락사 문제가 크게 공론화되면서, 노동조합도 설립되었습니다. 케어 노조는 "인권 없이 동물권도 없다"고 외쳤고, 현재 카라와 마찬가지로 조직 내 비민주주의, 대표의 독선적 의사결정을 문제삼으며 대표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케어 역시 그 이후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현재는 노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두 대형 동물단체 역시 과거 대표자 1인 중심의 운영 등 내부 조직의 비민주성이 크게 문제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 공론화는 노조측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나. 카라의 경우

현재 카라 노조 역시 그 설립 배경은 앞선 동물자유연대나 케어가 노조를 만들었던 배경과 유사합니다. 활동가들은 대표자 1인 중심의 비민주적 조직 운영에서 오는 여러 문제들을 체감하면서 노조 설립을 준비하게 됐고, 실제로 카라 노조는 3대 목표로 (1) 비정규직 철폐, (2)구조된 동물의 복지 향상, (3)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설정했습니다.

카라 노조는 위 목표에 따라 전진경 대표의 비민주적 조직운영 실태를 공론화했습니다. 총회 의결 없는 이사회에서의 셀프 연임, 3개월짜리 비정규직 남용, 돌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동물 구조,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위기 등이 그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적절한 회계 운용, 공적 절차 없는 골드바 구입, 동물폭행 방임 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 공론화했습니다. 노조가 아니었다면, 후원자나 시민들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3. 지속가능한 동물권 활동의 지원자이자 내부감시자로서의 노조

‘불쌍한 동물들 위해도 모자랄 판에 동물단체에 무슨 노조냐’ 등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발제에서도 잘 설명되었듯이 법적으로 노동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에 의해 생활하는 노동자라면 노동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에 따라 노조가 적법하게 설립된 것입니다. 즉, 이미 법적으로는 동물단체 노조는 너무나(?) 합법이고, 적법인데, 일부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동물단체에 노조가 설립되는 것에 반감을 갖는 분들의 경우 ‘동물단체에서 노조가 생기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주장을 하면, 동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는 인식의 흐름인 듯한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이나 다른 글에서 몇 차례 밝히긴 했지만, 헌신과 착취에 기반한 운동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동물단체 역시 결국 사람이 구성원이고 동물권 활동 역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근로 환경이 안정적이고, 안전해야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임금 수준이 너무 낮고, 단체 내에서 괴롭힘이 일어나고,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곳에서, 활동가에게 적극적인 동물권 활동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오히려 활동가들이 지나치게 소진되는 것은 아닌지, 일터가 안전한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노조는 활동가들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동물들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다른 단체들의 노조 설립과 투쟁 내용, 현재 카라 노조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노조는 내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후원조직인 동물단체는 공공성을 가지며 투명하고 민주적 운영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 조직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됐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그 조직의 구성원입니다. 동물단체의 구성원에는 활동가도 있지만, 후원회원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구조된 동물들도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온전히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한 활동가와 대표나 이사진 사이에서 활동가 개인이 조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후원회원 역시 조직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동물들 역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결국 조직 내 문제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는 활동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고, 그렇기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두 동물단체 및 현재 카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밖에서는 결코 알 수 없었을 안락사, 동물폭행, 후원금 운용 문제 등 내부의 문제들이 노조 덕에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러한 내부 문제제기는 직접적으로는 조직의 공공성과 관련한 것이지만, 결국 일하는 활동가들의 근로 환경과도 결부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동물단체 노조는 활동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동물권 활동의 지원자이자 시민단체의 내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노조가 후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결론

동물단체에서 노조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현재 카라의 문제는 노조의 발생 사실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전진경 대표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핵심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노조 혐오에 기대어 풀어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에 대해 문제라고 말할 수 있고, 자유로운 토론이 일어나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직은 발전합니다. 카라 노조가 활동가들의 근로환경 개선, 카라 내부 문제 해결과 소통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해주길 바라며, 이를 통해 동물권 운동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토론문 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환경운동연합 노동조합 김솔

최근 여러 시민단체에서 노동조합 설립 소식이 들려옵니다.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환경운동연합 등등. 여러 단체들에서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활동가들의 노동 설립이 단지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라거나, 많은 휴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활동가들 또한 노동자로써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에 몸 담은 활동가들은 노동조합의 의미를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규정합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지난 몇 년 동안 심한 진통을 앓았습니다. 3년 전, 새로운 리더십이 시작되면서 절반에 달하는 활동가들이 퇴사했으며, 부당한 활동가 징계 조치가 이뤄지는가 하면, 회원의 권리는 무시되었고,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한 비민주적 조직 운영이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운동 단체로써 넘어서는 안되는 운동의 방향성마저 독단과 퇴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단체에 남은 활동가들과 새로 들어온 활동가들은 그저 견디고 버티며 매일을 자신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활동을 이어갈 수 없었고, 결국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운동이나 단체를 살려보겠다는 거창한 생각보다는, 곁에 있는 동료 활동가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으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활동가들을 편가르기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도, 함께 운동하는 동료 활동가들만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가들이란 곧 그 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환경운동연합과 카라에서 마련한 집담회 자리에 참여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두 단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자신의 일이라며 성토했습니다. 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안전하지 않은 조직문화가 비단 몇몇 단체의 일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재 카라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카라가 겪고 있는 진통이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많은 조직이 내부에서 썩고 곪아 죽은 조직이 되어가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진통이 보다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낫기를 바랄 뿐입니다. 곁에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 한다면 분명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동료 시민 단체의 일원으로서 현재의 카라 사태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토론문 3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동물권행동 카라 후원회원 윤도현

안녕하세요, 공청회에 카라의 후원자로 참여한 회원 윤도현입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카라에 후원을 시작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2022년 4월부터 후원을 시작한 것으로 나오던데요. 당시 저는 아픈 고양이 하나를 구조하면서 동물과 더불어 사는 삶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카라를 알게 되었고, 카라에서 동물의 결연후원자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작게나마 한 동물이 그의 삶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계양이의 결연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요컨대 제 후원 동기는 구조된 동물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카라가 후원금을 적절한 목적으로 깨끗하게 쓴다고 믿었으며, 구조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 이어지는 동물의 삶에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카라와 같이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 된 단체가, 좋은 시설을 갖춘 단체가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단체에 후원하다 보면 동물이 처한 열악한 조건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금의 이 사태에 이르러 깨달았습니다. 후원만으로 막연히 카라의 동물들이 충분히 괜찮은 삶을 누리라라 믿는 것이, 후원만으로 동물과 함께 하는 더 나은 미래가 있으리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요. 저는 이 사태에 크나큰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지금까지의 제 태도가 안일했음을 알았습니다.

제 후원이 실제로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후원하는 조직이 문제 없이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것 역시 회원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덮어놓고 믿는 것은 속된 말로 돈줄이 되겠다는 태도겠지요.

제가 이 사태에서 특히 주목했던 부분은 대책없는 구조와 동물학대에 관한 일들 입니다. 카라는 작년에 대규모의 구조를 두 차례 했죠. 저는 당연히 그 구조를 반갑고 다행인 일로 생각했습니다. 구조의 파급력도 정말 컸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동물을 구조했는데. 이들이 충분히 괜찮은 삶을 누릴 수 있는지요. 저는 그래도 카라니까, 대책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최근에야 알게 되었지만. 카라는 구조 후 돌봄과 입양에 적절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연후원지를 모집할 만큼 복지에 신경쓰는 단체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이려웠습니다. 어쩌면 이미 이런 상황이라 일부 활동가의 동물학대 또한 묵인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제 행동을 보이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훈육하는 것, 감정적이며 폭력적인 태도로 훈육하는 것, 문제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고 모든 책임을 동물에게 돌리는 것.

어떻게 한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시설을 운영한다는 단체에서 동물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동물을 대하는 사람을 두둔할 수 있는지요.

이 일련의 사태, 대책없는 구조와 학대 사실이 말해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동물은 카라에서도 도구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의 대표에겐 동물이 도구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구조로 이목을 끈 후 동물이 적절한 돌봄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니까요. 동물이 폭행당한 사실보다 후원자가 빠져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보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카라의 회원 역시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카라의 운영에,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며, 대표의 마음대로 조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는 역할에 불과하지 않은지요.

저는 돈을 대주는 도구에 그치지 않으려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조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라의 행보에 실질적인 토론이 되는, 그리하여 인간도 동물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걷고 싶었습니다.

이 사태를 겪으며 카라의 회원이 목소리를 내고 카라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구나 저처럼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회원은 기껏해야 인스타그램의 공식 계정에 의견을 남기는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총회에서도 중요한 사안에 의견을 관철할 수 없는 듯 보였고, 그마저도 최근 들어 대의원의 조건이 까다롭게 변경되어 제약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도록 회원의 자리가 줄어든 것이, 카라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며 퇴화한 결과일 것입니다. 지금의 대표는 독단으로 인사를 결정해왔고, 카라의 운영 방식을 결정해왔습니다. 그 비민주적인 운영의 결과가 동물 학대, 각종 회계 문제, 그리고 단체 내 극심한 갈등이겠지요. 민주적인 단체 운영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보이며, 이 문제를 초조하게 바라보는 회원들 또한 단체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민 단체에 후원하며 갑의 위치에 있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이 단체의 운영에 의견을 내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체의 운영이 파행으로 치달을 때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 그것도 매우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일은 힘들겠지만, 단체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은 고인 물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저러한 역경이 있대도 비인간 동물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그리고 카라를 통해 그런 세상에 한 발 다가가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